

# 안산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05
--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1. 10. 23.  
 발 의 자 : 정 권 섭 의 원  
 의 5인

## □ 제 안 이 유

- 안산시공수의조례와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, 양 조례는 공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규정한 같은 성격의 조례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어,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 내용을 안산시공수의조례에 포함시키고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코자 함.

## □ 주 요 골 자

-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5조의2 신설)
-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함(안 부칙 제2항)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관계법령

- 안산시공수의조례
-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

# 안산시공수의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공수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 (여비) 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,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( 신 설 )</u>	<p>제5조의2 (여비) ①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,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.</p>

# 안산시공수의조례

&[1986.01.01 조례 제0074호]

개정 1991.03.08 조례 제0374호

개정 2001.03.16 조례 제095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공수의 (이하 "공수의"라 한다)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공수의의 업무)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
2.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
3.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
4.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
5.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
6.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4조<삭제 2001.03.16>

제5조(수당)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1991.03.08 조례 제0374호>

제6조(업무일지비치 및 보고) ①공수의는 월10일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  
②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1.03.0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1.03.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안산시 공수의여비조례

&[1986.01.01 조례제0026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여비정액)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 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준용)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척

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.